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95
----------	-------

발의연월일 : 2026. 5. 15.

발 의 자 : 강선영 · 서명옥 · 강대식
정점식 · 유상범 · 최수진
성일종 · 김 건 · 유용원
이달희 · 나경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의 법정 복무기간을 육군 2년, 해군 2년 2개월(해병 2년), 공군 2년 3개월로 각각 규정하면서 국방부장관이 병 지원을 저하 등의 사유 발생 시 6개월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등 재량적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핵심적 의무인 현역병 복무기간을 법률이 아닌 행정부의 재량적 ‘단축’ 조치에 의존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임의로 현역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복무기간 조정은 예외적인 ‘연장’의 경우로만 한정함으로써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복무기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2년”을 “1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2년 2개월”을 “1년 8개월”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2년으로”를 “1년 6개월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년 3개월”을 “1년 9개월”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조정”을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조정할”을 “연장할”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와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3호”를 “제2호”로,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면”을 “연장하려면”으로 한다.

1.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12개월 이내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창설된 경우 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 6개월 이내
3.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우: 3개월 이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현역의 복무) ① (생략)</p> <p>②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p> <p>1. 육군: <u>2년</u></p> <p>2. 해군: <u>2년 2개월</u>. 다만, 해병은 <u>2년</u>으로 한다.</p> <p>3. 공군: <u>2년 3개월</u></p> <p>③ ~ ⑧ (생략)</p> <p>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①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u>조정</u>할 수 있다. 이 경우 <u>제1호와 제3호</u>의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1. <u>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창설된</u></p>	<p>제18조(현역의 복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1. -----<u>1년 6개월</u></p> <p>2. -----<u>1년 8개월</u>. ----- -----<u>1년 6개월로</u>-----.</p> <p>3. -----<u>1년 9개월</u></p> <p>③ ~ ⑧ (현행과 같음)</p> <p>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연장) ① ----- -----<u>연장</u>할----- -----<u>제1호 및 제2호</u>----- ----- -----.</p> <p>1. <u>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12개월 이내</u></p> <p>2.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p>

경우 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

2.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

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

3.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

는 병 지원을 저하로 복무기

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연장사유가 없어도 즉시 복무기간 연장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경우에는 추후 보고할 수 있다.

대가 증편·창설된 경우 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 6개월 이내

3.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우: 3개월 이내

② -----제1항제3호-----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2호-- -----
연장하려면-----

-----.